

Korean Tax Update

April 2016, Issue 22

[조세뉴스]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 소득금액 5,129 억원 신고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 개월간(2015.10 ~ 2016.3) 실시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를 실시한 결과, 신고서는 총 642 건 접수되었다고 밝힘. 세금신고 422 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 건, 현지법인명세신고 97 건으로 신고된 소득금액은 총 5,129 억원, 납부세액은 총 1,538 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 조 1,342 억원으로 집계됨.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며,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부수효과도 있음.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으로도 기대됨.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획재정부는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동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 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함.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 94 조제①항)에 따라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등

동 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함.

세계 주요 과세당국, 역외탈세에 유례없는 국제공조의 길을 열다

2016. 4. 13 (한국시간 4.14.) 역외탈세공조협약체인 JITSIC 35 개 참여국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면서 소위 Panama Papers 관련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음.

우리나라 국세청은 세계최고로 평가 받는 DB 분석역량을 통해 JITSIC 참여국 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 아울러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것임.

금번 Panama Paper 문제에 맞서 세계 주요 과세당국은 사상 유례없는 긴밀한 공조의 길을 찾아 나섰으며, 내년부터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시행될 예정임. 글로벌 역외금융정보 인프라가 구축되고 과세당국 간 공조가 긴밀해졌으므로, 더 이상 역외탈세는 발 붙이기 어려울 것임. 국세청은 역외소득을 포함해서 세금을 성실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임.

한일 국세청장, 최근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6. 4. 6. (수) 일본 동경에서 나카하라 히로시 일본 국세청장과 제 25 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세정 운영현황과 BEPS* 이행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 OECD 회원국들의 국제공조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대응방안이 2015. 11.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되고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 등 BEPS 후속조치 이행 중에 있음.

[개정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102 호, 2016.4.26)

①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인하

종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 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금액으로,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형평성 원칙에 맞도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은 자가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 2016-12 호, 2016.4.1)

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고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음.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 목적을 소명하여야 함.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 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 2016-9 호, 2016.4.2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비보고 금융기관 요건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금융상품 추가에 따른 일부 비보고 금융계좌 신설, 현금가치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의 소액 기존 개인계좌 실사 절차상 비보고 금융계좌 요건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함.

- ① 현금가치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과 관련하여 소액 기존 개인계좌의 경우 보고대상 관할권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비보고 금융계좌요건을 명확화
- ② 보고대상 관할권 거주자에 대한 납세자번호 수집을 조세조약이 시행되는 해의 직전연도 12 월 31 일까지 유예
- ③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고 금융기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정
-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신설되어 동 계좌들을 보고 제외계좌로 추가

[예규·판례]

[예규 1]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재법인-312, 2016.03.30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10 에 따른 통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 13 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 56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 56 조 제 2 항 제 1 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3 조 제 9 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환세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 93 조 제 8 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93 조 제 9 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93 조 제 9 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 46 조 제 2 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 56 조 제 2 항 제 1 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예규 2]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발행된 출자전환주식의 시가

사전법령법인-399, 2016.03.02

-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예규 3] 분할신설법인이 K-IFRS 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

서면법령법인-2389, 2016.03.11

-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 하면서 K-IFRS 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특허권 등”이라 함)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동 특허권 등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 결정하거나 또는 당해 법인이 수정 신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K-IFRS 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5 호의 2 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 24 조 내지 제 34 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판례 1] 과점주주 판단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대법원 2011 두 26046, 2016.03.10

-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의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건설 설립 당시인 2004. 1. 6.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2007. 3. 30.경 원고들이 다시 ○○건설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 조 제 3 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심판례 1] 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을 조기결제 함으로써 이익을 분여 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조심 2016 중 120, 2016.03.16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법인세법」 제 28 조의 취지는 법인의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차입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매입채무를 조기 결제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이고, ○○○의 요구에 따라 매입대금 결제기간이 단축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안정적인 물품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조기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조기결제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심판례 2] 국민주택규모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심 2015 중 5668, 2016.03.09

-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양할 당시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 쟁점오피스텔은 호수별 전용면적이 85 m² 이하이고, 건축 및 분양 당시부터 주방시설, 방과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이 있는 공동주택 구조인 점, 바닥 난방시설, 도시가스 배관·상하수도 공사가 모두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건축시부터 주거용으로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 분양자가 쟁점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고 있는 점,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

텔은 분양 당시 주거용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3] 보험회사의 콜센터 운영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5 서 280, 2016.03.24

- 쟁점계약서상 상담원 수당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험상담원 수당의 종류 및 상담원별 지급율 등을 정함에 있어 (주)OO 홈쇼핑의 의사나 승인 없이 청구법인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뚜렷한 반론이 없는 점, 콜센터 상담원 등의 실적 제고를 위한 시책비, 교육비 및 보험상담원의 잘못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위원회 질의회신문에서 “보험모집”을 판매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업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보험 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coe@kr.kpmg.com

© 2016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